

입시홍보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신·편입학관련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홍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입시홍보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,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, 2007.09.01>

제2조(조직) ① 입학홍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,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입시관련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5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자료제공) 각 부서는 당해부서의 현황, 중요업무, 중요입시행사, 각종 입시관련 간행물 및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한 입시관련 홍보자료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9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입학지원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07.9.1.>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제10조(재정)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8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-17-0-4 입시홍보위원회 규정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